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백 인 기	일본명	
	한자	白 寅 基	이 명	
출생 연월일	1882년 2월 29일		사 망 연월일	1942년 5월 18일(음력)
본 적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3번지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882.2.29	출생 (白氏大同譜 8, 388쪽)
1899 · 1900~	상업활동 (황성신문, 1901년 11월 26일 광고, 1907년 9월 13일 광고)
1900.10	탁지부 주사 (관보, 1900년 10월 19일)
1902.7	혜민원 참서관 (관보, 1902년 7월 15일)
1904년 ~ 1945년	
1904.10	육군보병 參尉 (관보, 1904년 10월 3일)
1905.7	정3품 통정대부 (관보, 1905년 7월 6일)
1906.6	주식회사한성농공은행 감사 (관보, 1906년 6월 14일; 황성신문, 1906년 6월 6일 3면)
1907.2	호남철도주식회사 정리위원 (황성신문, 1907년 2월 7일 3면)
1907~1908.9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이사 (황성신문, 1907년 2월 12일 3면, 1908년 9월 24일 2면)
1907.4	일본실업시찰단원 (황성신문, 1907년 4월 30일 2면)
1907.7~1911	한호농공은행 감사, 이사 (황성신문, 1907년 7월 27일 3면, 1910년 7월 28일 1면; 조선신사명감[1911], 84~85쪽)
1907	彰熙組合 조합원 (황성신문, 1907년 9월 13일 3면, 1907년 9월 14일 3면)

	1907.10	한성부민회 內事委員長 (황성신문, 1907년 10월 15일 1면)
	1907	대한권농주식회사 이사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9일)
	1907.10	目賀田種太郎男爵送別漢城實業會 평의원 (황성신문, 1907년 10월 31일 1면)
	1907.12~1915	한일은행 전무 (황성신문, 1907년 12월 17일 2면; 조선신사명감[1911], 84~85쪽; 매일신보, 1915년 10월 19일 2면)
	1908.2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 발기인 (황성신문, 1908년 2월 16일 4면)
	1908	共成學校 발기인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일 2면)
	1908.5	대한학회 발기인 (황성신문, 1908년 5월 14일 3면)
	1908.6	호남학회 발기인 겸 재무부장 (호남학회보, 1호, 1908년 6월; 황성신문, 1908년 7월 15일 1면)
	1908~1927	일한가스전기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 발기인,이사 (황성신문, 1908년 10월 3일 2면; 경성전기주식회사20년연혁사, 25쪽,「역원표」; 조선은행회사요록[1921~27])
	1909.2	부국직물주식회사 설립 (황성신문, 1909년 2월 23일 1면;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24일)
	1909~1911	경성상업회의소 상의원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28일 2면; 조선신사명감[1911], 84~85쪽)
	1909.10	開城遠足會 회계 담당 (황성신문, 1909년 10월 20일 2면)
	1909.11	伊藤博文追悼會 設行委員 司察 (황성신문, 1909년 11월 6일 3면)
	1910.8	청년실업구락부 발기인 (황성신문, 1910년 8월 31일 2면; 매일신보, 1910년 8월 31일)
	1910.8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6등 태극장 받음 (관보, 1910년 8월 25일)
	1910.10	천장절축하회 설비위원 (매일신보, 1910년 10월 26일 2면)
	1911.3	農談會 贊成員 (매일신보, 1911년 3월 28일 3면)

	1912	만한실업협회 명예회원, 평의원 (滿韓之實業, 82호 제2, 1912년 12월, 84호 제2, 1913년 2월)
	1913.3	閔丙奭 趙重應 등과 함께 경성유치원 설립 (매일신보, 1913년 3월 8일 2면)
	1913.3	호서은행 발기인 (매일신보, 1913년 3월 25일 2면)
	1913.10	천장절봉축회 위원 (매일신보, 1913년 10월 26일 3면)
	1913	메가타[目賀田種太郎]의 화폐재정정리사업에 협조한 공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관보』[일본내각] 제247호 부록, 1913년 5월 28일; 한국병합기념장재가서 5, 87쪽)
	1914	매일신보 주최 일본시찰단 참여 (매일신보, 1914년 3월 23일 1면)
	1914~1915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경기도평의원, 협찬회 常議員 (매일신보, 1914년 9월 19일 2면, 1915년 1월 31일 2면)
	1914.10	京城神社大祭 神輿警衛係 第四班 班員 (매일신보, 1914년 10월 17일 2면)
	1915~1920	경성부협의회원 (경성부사[1934], 140쪽, 428쪽, 523쪽; 경성일보, 1917년 4월 3일 2면; 동아일보, 1920년 5월 9일 2면)
	1915.6	京城神社 氏子總代 (매일신보, 1915년 6월 25일 2면)
	1915.7	일본적십자사조선본부 제2회 총회 협찬위원 (매일신보, 1915년 7월 13일 2면)
	1915.11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금융부문 공로상 수상 (경성일보, 1915년 11월 23일 1면; 조선산업계[1916], 65쪽)
	1918~1937	조선식산은행 상담역 (조선식산은행20년지, 267쪽)
	1919.12	조선경제회 이사 (매일신보, 1919년 12월 8일 2면)
	1920	조선신궁 건립 기금 헌납 (조선신궁기, 129쪽)
	1921.7	조선인산업대회 지방위원(전북) (동아일보, 1921년 8월 1일 2면)

1921.10	경성 도시계획연구회 간사 (동아일보, 1921년 10월 26일 2면)
1921.10	조선농회 이사 (조선농회보, 16권 10호, 1921년 10월)
1921~1927	조선농업주식회사 감사, 이사 (조선은행회사요록[1921~1927])
1921~1923	조선물산무역주식회사 대주주 (조선은행회사요록[1921~1923])
1922.11	조선구락부 발기인 (조선구락부창립관계사료, 齋藤實文書 12권, 107쪽)
1923.5~1926.10	조선실업구락부 감사 (조선실업구락부, 4권 5호~7권 10호)
1923~1927	조선농업주식회사 대주주 (조선은행회사요록[1923~1927])
1923~1931	고려요업주식회사 부사장 (조선은행회사요록[1923~1931])
1925.5~1927.5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 (매일신보, 1925년 5월 23일 4면; 동양척식주식회사20년지[1928], 153쪽)
1925~1929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감사 (조선은행회사요록[1925~1929])
1925~1929	京城興産株式會社 감사 (조선은행회사요록[1925~1929])
1927.4~1930	경기도평의원(관선) (매일신보, 1927년 4월 2일 3면; 동아일보, 1927년 4월 2일 4면)
1927.6~1930.6	중추원 참의(칙임대우) (조선총독부관보, 1927년 6월 8일, 1930년 6월 4일;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1928~1929])
1928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 발기인, 평의원, 부회장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1930], 3쪽, 14쪽, 19쪽)
1929.5	조선박람회 평의원 (조선총독부관보, 1929년 5월 15일)
1929	協濟公司 주주 (滿蒙 各地에서의 鮮人의 농업관계 雜件(1), 協濟公司 제8기 영업보고서 進達의 件)
1929~1931	조선물산주식회사 이사 (조선은행회사요록[1929~1931])

	1929	조선무연탄주식회사 이사 (조선은행회사요록[1929])
	1930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조선박람회경성협찬회보고서[1930], 2쪽)
	1931	전북기업주식회사 사장 (조선은행회사요록[1931])
	1936.6~1938.11	조선실업구락부 상담역 (조선실업구락부, 15권 140호~16권 169호)
	1936~1942	華星社 사장 (조선은행회사요록[1937~1942])
	1942.5.18(음력)	사망 (白氏大同譜 8, 388쪽)

조사내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8호(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로 활동

▶ 『조선은행회사요록』, 1925, 399~400쪽.

"◎ 東洋拓殖株式會社

(중략) 감사 島德藏

同 福本元之助

同 **白寅基** (후략)"

▶ 『매일신보』, 1925년 5월 23일, 「동척총회」.

"동척총회 **白寅基**氏 監事被選(후략)"

【참고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기능 및 감사의 업무

- 출전: 『東洋拓殖株式會社創立顚末書』, 114~121쪽; 『東拓十年史』, 1918; 『東拓の殖民事業』, 1935, 『資料選集東洋拓殖會社』(재단법인 友邦協會, 1976) 175~180쪽 참조.

'한국에서의 척식사업 영위'를 영업목적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의거하여 1908년 12월 설립된 이 회사는 일제의 산업·경제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척식이민사업(1908~1917년), 산미증식계획(1920년대), 군수공업화·대륙병참기지화정책(1930년대 이후)을 충실하게 수행한 국책회사였다.

동척의 役員은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30주 이상 소유한 주주 가운데에서 선출했으며 조선총독이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었으며 회사의 업무를 감사했다.

2. <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중추원 참의로 활동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1928~1929.

조사시기	소속기관	관직	관등	공훈	이름
1928	조선총독부직속기관-중추원-직속	參議	(연수당1500원)(勅任待遇)		**白寅基**
1929	조선총독부직속기관-중추원-직속	參議	(연수당1500원)(勅任待遇)		**白寅基**

▶ 『조선총독부관보』, 1927년 6월 8일.

"「敍任及辭令」

○ 昭和 2년 6월 3일

(중략) 勳6등 **白寅基**(중략)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하명받고 칙임관으로 대우받음(중략)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白寅基** (중략) 手當年額 千五百圓 下賜(후략)"

3.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메가타의 화폐재정정리사업에 협조하여 1913년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 일본내각, 『관보』 제247호 부록, 1913년 5월 28일.

"(중략) 韓相龍 趙鎭泰 李鳳來 白完燁 **白寅基** 趙秉澤(중략)

明治 45년 칙령 제56호의 취지에 의거해 한국병합기념장이 수여됨(大正 元年 8월 1일 賞勳局)"

▶『韓國併合記念章裁可書』5, 87쪽.

"正五位 勳二等 鶴原定吉外 950명에게 한국병합기념장 수여의 건

右를 삼가 상주합니다.

大正 2년 3월 29일

내각 총리대신 백작 山本權兵衛 (중략)

明治 9년 3월 日韓修好條規 체결 이후 日韓關係에서 특히 공훈이 현저한 자(병합 당시의 조선인 은행원)				
병합관계사유	병합당시의 관직	現官職	勳等	씨명
구한국재정정리 때 지방금융기관의 요직을 담당하여 특히 금융상 공적이 있었음	한성은행 이사		勳四	韓相龍
同	同	한성은행 이사		趙鎭泰
同	천일은행 이사	조선상업		李鳳來

		은행 이사		
同	한호농공은행 이사	한호농공 은행 이사		白完燁
同	한호농공은행 이사	同		**白寅基**
同	한일은행장			趙秉澤

▣ 기타사항 白寅基의 토지소유 규모

조사년도(자료발행연도)	전답면적(자산규모)	자료
1926년 8월	전북 1249.9정보[沓 1136.6, 田 99,9, 임야 0.1, 기타 13.3]	『全羅北道地主所有地調(1926)』
1930년 말	전남북 2696정보[沓 2099, 田 197, 기타 400]	『全羅北道全羅南道地主調(1930)』
1936년	전북 3686정보[沓 1483, 田 2203, 소작인수 4685명, 마름, 55명]	『昭和11년도 道內地主一覽』(1936)

판 단

1. **백인기**는 1905년 이후 재정고문 메가타[目賀田種太郎]의 화폐재정정리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한성농공은행 감사 및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이사로 활동하고, 나아가 한일은행 전무로 취임하여 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계 거물로 부각된 인물이다.

조사내용에서 밝혔듯이, 그는 1925년 5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정기총회에서 조진태의 뒤를 이어 감사로 선출되었다. **백인기**가 동척의 감사로 활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제시기 대표적 수탈기관의 성장에 기여한 사실은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8호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에 해당한다.

2. **백인기**는 1927년 6월~1930년 6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참의(칙임대우)로 재직하여 연수당 1,500엔을 지급받았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에 해당한다.

3. **백인기**는 러일전쟁 후 메가타가 실시한 화폐재정정리사업에 협조하여 금융기관 재편의 일환으로 설치한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이사, 한호농공은행 감사 및 이사로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금융상의 공적' 으로 1913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백인기**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 제18호,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